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6호
----------	-----------

발의년월일 : 2007. 3. 27.

발 의 자 : 최 미 경 의원

1. 수정이유

2007. 3. 26. 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수정 의결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위원회 수정안 외에 추가 수정 사항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별표1】의 “직명(위) 및 업무분야”를 현행과 같이 하고,
- 나. 【별표1】의제6호 구의회 관련분야 구의회 전문위원 6급 상당의 직무내용 “의안 심의 및 검토보고”를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 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로 하고,
- 다. 【별표1】의제6호 구의회 관련분야 구의회 전문위원 7급 상당 관련 내용은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별표1】**의 “직명(위) 및 업무분야”를 현행과 같이 하고,
- **【별표1】**의제6호 구의회 관련분야 구의회 전문위원 6급 상당의 직무내용 “의안 심의 및 검토보고”를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 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로 하고,
- **【별표1】**의제6호 구의회 관련분야 구의회 전문위원 7급 상당 관련 내용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6. 구의회 관련분야

현행					개정안					수정안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직명(위) 및 업무분야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근거
구의회 전문위원	5급상당	의안 심의 및 의사 진행보좌	(생략)		구의회 전문위원	5급상당	의안 심의 및 검토 보고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신설>		구의회 전문위원	6급상당	의안 심의 및 검토 보고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	

							<p>학력소지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p> <p>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p> <p>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p> <p>7.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u>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u></p>	
			<신 설>	<p><u>구의회 전문위원</u></p>	7급 상당	<p><u>의안 심의 및 검토 보고</u></p>	<p>1.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p> <p>2.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p> <p>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p> <p>4.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p> <p>5.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p> <p>6.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삭 제>	<삭 제>	<삭 제>	
속기사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